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공사완료 공고) 추가 등〉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5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공사완료 공고) 추가	3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시 의제 인 · 허가등 실효 ...	13
3. 부칙(시행일)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공사완료 공고) 추가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정 해제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u><신 설></u>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u>
※ 관계 조문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¹⁾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공사 준공으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달성하였으므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자가 사업 중에 적용받는 행위제한을 불합리하게 받지 않을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사완료 공고 시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정 해제 사유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2) 한국농어촌공사

개정안에 따라 사업 준공 이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구역 내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규제 합리화 사안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1) 안 제8조제3항 신설 관련 사항은 검토의견 2.에서 후술함

나. 검토의견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제도 현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2)에 따른 시설로, ①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시설물, 그 부대시설과 ② 영농시설임.

< 농업생산기반시설 분류 >

연번	내용						
1	다음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①	저수지	⑤	취입보	⑨	도로
		②	양수장	⑥	용수로	⑩	방조제
		③	관정	⑦	배수로	⑪	제방
		④	배수장	⑧	유지(웅덩이)	⑫	기타
2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사업”이라 한다)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3)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淤: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지(溜池)관리재원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여덟 개 종류의 사업이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종류 >

연번	사업 내용	관련 법률
1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2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4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
5	기반시설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8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구역”이라 한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경우 지정하게 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승인 과정은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② 사업계획 승인, ③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제4조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시설관리자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기본방향 설정
↓			
제5조제2항	사업계획 승인	농식품부	-
↓			
제5조제2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요청	농식품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제5조제2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			
제7조 및 제8조	활용구역 지정(해제) 및 고시	농식품부	활용구역 지정을 지정(해제), 그 사실을 고시하고 주민 등에 알림
↓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세 설계 및 계획 수립
↓			
제11조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 (권한 위임)	실시계획의 상세 내용을 검토, 승인 *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위임사항 (농식품부→시·도지사)
↓			
제11조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공사 착공 등
↓			
제20조	준공	시·도지사 (권한 위임)	공사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6.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업기반시설법」”이라 한다)이 2009년 제정(2010년 시행)된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1개 지구(팔덕지 수변개발사업)가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해당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시행 현황 >

-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원
- ☐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행정지원),
(주)강천파크(자금조달, 인허가, 공사발주, 운영 등)
- ☐ 사업내용: 관광호텔(48실) 및 웰니스스파, 상가, 펜션(24필지) 등
- ☐ 개발면적: 20.7ha(207,620㎡)
- ☐ 총사업비: 446억원 (호텔건축 용자: 문체부 관광진흥기금)
- ☐ 사업기간: 2012~2026(15개년)
- ☐ 추진현황
 - ('13) 사업계획 승인(농식품부)
 - ('17) 사업협약 체결
 - ('20) 실시계획 승인(전북도)
 - ('21) 부지조성공사착공
 - ('25) 호텔건축공사 착공(예정)
- ☐ 준공 조감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본부 기획조정실, 2025. 2. 4.

2)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는 현행법 제9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됨.⁴⁾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① 건축물의 건축, ② 인공구조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⑤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⑥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⑦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행위제한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는 공용필요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⁵⁾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전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제17호에 따른 입어·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 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5)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349.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내 행위 제한 >

구분	내용(세부내용)		
대상 지역	현행법 제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제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 굴착, 공유수면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5	토지 분할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에 따른 입어 ⁶⁾ ·유어 ⁷⁾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 ⁸⁾
	8	식물재배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0.

그런데 현행법 제8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로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세 가지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음.

6) 입어자(入漁者)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수산업법」 제2조제8호)
 7)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수산업법」 제2조제17호)
 8)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준공검사 이후 공사완료가 공고되었음에도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여전히 행위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를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해당 구역의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유사 입법례: 공사완료의 공고와 구역 지정 해제 >

「도시개발법」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환지(換地)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를 공고한 경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0.

다만, 개정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를 “제21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개정안 제8조만으로는 ‘제21조에 따른 공사’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제21조에 따른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사업 공사’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시 의제 인·허가등 실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에 따라 의제한 관련 인·허가등이 그 효력을 상실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u><신 설></u>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한다.
※ 관계 조문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현행	개정안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 공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현행	개정안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관련 인·허가도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2) 한국농어촌공사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의제 받은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제도
현행법 제1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등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제하도록 규정함.

의제할 수 있는 관련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는 총 35개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할 수 있는 관련 인·허가 >

호 번호	법률	인·허가등
1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2	건축법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건축협의를
3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승인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6	관광진흥법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호 번호	법률	인·허가등
7	광업법	불허가 처분
		광업권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11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13	도로법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중
		노선지정 고시
		도로구역 결정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점용허가
	유료도로법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허가·협의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허가·협의
1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민 등 의견청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호 번호	법률	인·허가등
19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일반수도사업 인가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전용상수도설치 인가
		전용공업용수도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개장허가
26	주택법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업의 시작·변경 또는 완료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30	초지법	초지조성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초지전용허가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측량성과사용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33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34	하천법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중
		하천공사의 시설 허가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항만법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0.

참고로, 현행법 제15조제3항은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관하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이에 따라 ①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¹⁰⁾ ②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게 됨.¹¹⁾ 또한, ③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의 의무가 부여됨.¹²⁾

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0)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이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11) 「행정기본법」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12) 「행정기본법」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특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을 각각 받도록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이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인·허가등의 의제제도가 도입되었음.¹³⁾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의제한 관련 인·허가등은 주된 인·허가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 그쳐야 함.

이에 주된 인·허가등에 따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등은 물론 관련 인·허가등의 효력 역시 해소될 필요가 있음.

「농업기반시설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된 인·허가인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등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①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물론 개정안에 따라 ③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됨.

1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38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와 같은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은 그 목적을 더는 달성할 수 없거나 이미 달성하여 지속될 수 없는 사업임.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관련 인·허가등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관련 인·허가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의제한 관련 인·허가등이 그 효력을 상실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에 따르면 의제한 관련 인·허가등의 효력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의제한 관련 인·허가등이 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효력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 인·허가등의 효력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39. (생략)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1.

3.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부칙에 수용함.

다만, 개정안은 하위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낮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임.

2)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의제되었던 관련 인·허가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임.

개정안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이에 부수되는 행위 제한 및 관련 인·허가등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하위 법령 정비가 요구되지 않고 입법미비를 보완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조속한 실시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